

의안
번호

114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04. 18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114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04. 07.

라. 회부일자 : 2023. 04. 11.

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」 개정과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대표협의체의 기능 신설(안 제4조제1항)
- 나.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(안 제5조의2)
- 다.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설(안 제12조제4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」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3. 02. 23. ~ 2023. 03. 15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」 개정사항과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안 제4조제1항제7호(대표협의체 기능)

- 대표협의체의 기능¹⁾을 추가한 것임. 이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개정으로, 사회복지사 등의 “처우개선위원회”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 기능을 “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가 대신하도록 개정²⁾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」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임.

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 제4조(대표협의체의 기능)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, 시행, 변경, 평가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3.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4.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5.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개정 2020.5.14.)
6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
7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·단체간의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.

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」 제6조(처우개선위원회)

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.

②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.(2022.12.30.)

나. 안 제5조의2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및 안 제12조제4항 신설

-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.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약칭: 사회보장급여법)제5조제7항³⁾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<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>

제5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정한다. <개정 2017. 9. 21.>

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구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회 생활보장 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령인 「사회보장급여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